

미국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 및 지적 소유권

1. 미국의 표준화와 미국 규격협회 (ANSI) 의 역할

미국규격협회 (ANSI)는 미국내 자율 표준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ANSI연합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 첫째, 민간부문이 주도하며, 정부의 주도에 의한 시장의 왜곡 현상이 없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러한 미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연합제도.
- 첨단 표준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미국의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조하는데 있어서의 세계적인 지도력과 전문 능력.
- 최고를 지향하며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체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두 자라고 인정받는 세계적인 표준화를 기하는 제도.
- 공통의 절차와 규칙 아래 움직이는 많은 표준개발 조직체들의 조직 다양화 및 자율적,

경영 방식을 갖춘 고도로 다기화(多技化)된 제도

- 제도의 이익을 위해 (지역적 이익보다는) 움직이며 합의에 바탕을 둔 관리를 하는 광범위하고도 기본적인 역동적 공사부문 (公私部門)의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회원체.
-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가 국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조직체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서 그 책임을 수행하면서 협회의 목적과 기능을 훌륭하게, 일괄성 있게 이행하는 것.
- 법률상 하자 없이 건설하면서도 외부의 개입 없이도 건설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제도.
- 끝으로, 회원들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일과 협회의 정책구상 및 전략방향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회원 지도부의 배양.

ANSI는 70 여년 전 미국의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자율표준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미국의 표준제도는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지며 실질적 당사자들이 표준개발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SI의 회원은 매우 광범위하며 1,200 회원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250개사는 무역, 인력 및 전문협회이고 20개사는 정부기관이다. ANSI로서는 직업 안전 보건국(Occ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식품 . 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및 가장 최근에 설립된 표준기술 국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등과 같은 여러 정부기관들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의 여러 소속 기관들과도 점진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ANSI의 광범위한 회원사들이 노력을 집중, 반영시켜 자율적 합의에 근거한 표준의 설정 과정을 제 공하고 요구사항의 판별 및 노력의 이중낭비의 방지를 위해 표준개발 조직체와 공동작업을 하는 일은 ANSI의 이사회,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ANSI는 표준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전 표준의 97% 는 회원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ANSI의 승인을 얻기 위해 표준을 제출한 200여 개 이상의 조직체를 신용하고 있

다. 협회는 또한 국제표준 활동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ANSI의 관계를 살펴 보자. 협회는 선도적 비가맹 조직체인 국제표준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oin), 국제전자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동 위원회는 미국 국가위원회를 통해 업무 담당) 및 태평양지역 표준회의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등에 대해 오랫동안 공식 미국대표로서 업무를 제공하고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범미주 표준위원회 (Pan American Standards Commision)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아주 오래전에 중단한 후 동 위원회에의 재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ISO와 IEC내에 수 개의 가장 중요하고도 생산적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일본과 함께 PASC에서 주요한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PASC는 ISO와 IEC와는 달리, 표준을 개발하지는 않으나 비유럽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균형 세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제기구의 관리 참여에 있어 한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지도력과 참여 활동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ANSI는 유럽의 지역기구들, 즉 구주 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ization institute), 구주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구주전자기술 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ission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및 구주시험 및 인가기구(E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ANSI의 후원을 받고 있는 미국대표들은 이들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준, 시험 및 인가등의 주제에 관해 일련의 고도의 생산적인 토의를 개최하여 왔다. 이러한 회의는 유럽지역에서의 진행사항에 관해 건설적인 이해를 갖고 생산적인 접근을 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제 4차 연속회의가 이번 4월에 위성 턴 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SI의 브뤼셀 사무소는 이들 회의에 관한 매우 유익하고도 유용한 보고서를 계속 발행할 것이다.

협회는 또한 유럽 및 비유럽의 국가표준기구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와 가장 빈번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국가기구로서는 일본의 JISC/JSA, 캐나다의 SCC, 프랑스의 AFNOR, 독일의 DIN, 소련의 GOST, 캐나다의 CAS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더 열거할 수 있다. 이들 기구와의 자문 및 조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유럽 및 비유럽 기구들과 공조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전기통신표준

미국 전기통신표준 분야에서의 국내활동은 동 산업부문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약 10년 전 까지만 해도 비교적 조용했었다. 그런데 ANSI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구가 조직되었으나 바로 교환기 사업자 표준협회 (ECSA: 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 가 그것이다. 또한 전기통신표준 분야에서는 T1위원회 (T1 Committee)라고하는 매우 중요한 표준개발위원회가 조직되었다.

ECSA는 이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기통신장비표준은 전자산업협회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와 전기통신산업협회 (TIA: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가 작성한다. 컴퓨터 접속표준은 X3 위원회 (X3 Committee)를 통해 컴퓨터 및 사업장비 제조업체협회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취급하고 있다.

국제분야 쪽을 살펴보면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전자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그리고 정부 단체로서 가맹기구인 CCITT등이 위의 조직이다. 최초의 공동 ISO/IEC 위원회인 JTC-1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유럽공동시장 쪽에는 ANSI가 옵서버로 있는 구주 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가 있다.

이들 단체는 매우 급속한 기술의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에서의 중요한 전기통신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중요한 표준을 더 앞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불굴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3. 미국 (ANSI)의 표준화 특허 정책

ANSI의 특허정책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든 민간조직이든 간에 규칙 준수의 관리를 하는 제 3 기구의 간섭없이도 대폭적인 자율정책을 행하는 단순한 체제를 수립하려는 ANSI의 주요 정책과 모순이 없는 산업자율시스템이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간 성공적으로, 그리고 큰 문제나 마찰 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

특허정책은 특허권이 필수 보존과 미국의 반트러스트 및 반경쟁법의 명령사항 사이에 공정하고도 형편에 맞게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ANSI는 특허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고 하든 또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하든 간에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그 특허를 인가해 주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제품 또는 특허공정의 사용을 요구하는 표준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특허명시서를 예시한다.

" 11. 특허의 미국가표준에의 삽입

기술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특허품목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명백히 표현하는 미국가표준 제안을 입안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만약 협회가 어떤 미국가표준 제안이 특허발명의 사용을 요구하는 통지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12절부터 15절 까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 특허권 소유자의 명시서

그러한 미국가표준제안의 승인에 앞서, 협회는 특허권 소유자로부터 (협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사용시 미국가표준제안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어떠한 발명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소유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을 일반적인 권리 포기 형식으로 접

수하거나 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증을 접수해야 한다:

- (1) 그 표준을 이행할 목적으로 어떤 면허를 활용하고자 원하는 신청자에게 보상을 지급함이 없이도 그 면허를 취득한다. 또는 ,
- (2) 명백히 어떠한 불공정한 차별대우가 없는 정당한 조건으로 신청자는 면허를 취득한다. 면허의 조건은 ANSI 협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면허의 조건을 수탁했거나 수탁을 표시한 독립된 피면허자가 있을 경우 그 숫자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ANSI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난 20년간 완벽한 검토도 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 때문에, ANSI에서는 정책을 검토하고 지침서의 작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체 (특허위원회)를 조직하였다.

ANSI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회원 중에서 저명한 일단의 법률고문을 소집하였다. 그때부터 절차의 의도를 명확히 한 지침서의 작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치 침서의 취지는 ANSI가 자격을 부여한 표준개발자 (이하 "표준개발자" 라 칭함) 및 그 회원들이 특허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ANSI의 특허정책 (이하 "정책"이라 칭함)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표준의 정착도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표준 정착의 촉진.
- 개발중인 표준과 관련된 특허의 조기 명세 공개 및 판별의 촉진.
-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용 가능한 최고 기술 사용 촉진.
- 특허 소유자의 특허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 표준개발 절차의 효율성 증진.

그러나 이들 지침은 표준개발자가 정책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표준개발자가 그의 임의대로 전부이든 일부이든 정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절차를 찾아 준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추가 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책 용어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권장하였다:

”특허”란 만료가 안된 미국 특허을 가리킨다. 그러나 표준개발자는 미국 특허 및 상표국에 제출하여 출원중인 특허도 이 용어에 포함시키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출원의 내용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제안에 기증함으로서든 또는 공표에 의해서든 관련표준개발자에게 그 출원의 주제가 공표되거나 알려지는 상황정도로 출원을 이 용어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한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제한기준을 적용한다면 출원 특허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어지지만 출원자는 여전히 개발중인 표준에 대한 특허 대상의 적용성 및 출원자의 면허의도 여부에 관해 정책12절에 규정된 보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도 장차 면허를 받게 될 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피면허예정자와 출원자 간에는 기밀협상의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의 대상과 신청된 면허는 체한된 범위 내에서 면허인가자의 제량껏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절에서 사용된 ”통지”란 서면으로든 비서면으로든, 어떤 미국가표준제안이 특허된 신안의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을 통지의 형식으로 ANSI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통지는 ANSI에게 인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표준개발자가 표준제안이 미국가표준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ANSI에 송부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통지 (ANSI가 제공하는 기존 양식에 의거)를 제출함으로써 표준제안의 이행을 위해 어떤 특허 신안의 사용 요구 여부에 대해 ANSI에 알리는 것이 상례이다. 표준개발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심의 중에 있는 통지의 형태를 ANSI에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택할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개발자의 회원들이 그보다 빠른 시기에 강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어떠한 표준제안 또는 다른 계획이, 미국가표준이 되기 위한 ANSI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정책 11절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준개발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경우 비미국가표준제도와 관련된 그러한 통지, 예를 들어 개발중인 표준을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특허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회의 사무국이나 의장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등한 것을 포함하는 내부절차를 채택하도록 허락을 받아하게 된다.

일치 요건에 관하여, 특허소유자는 그가 "사용시 미국가표준제안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신안(발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소유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정책 12절을 만족시킬 수 있다 (강조 문구가 추가됨). 정책 취지상, "일치 요구"라는 용어는 여하한 표준의 어떠한 부분에 일치함으로써 그 특허소유자의 관점에서 볼때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권의 침해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보증에 일치 요구의 조건이 없을 경우 표준개발자와 그의 회원들은 이를 통보받고 그런 다음 그 보증에 의지할 수도 있다.

특히 소유자는 또한 "명백히 어떠한 불공정한 차별대우가 없다는 정단한 조건 아래" , 면허가 이용 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라는 보증을 신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 12절을 만족시킬 수 있다.

지불하게 될 특허권 사용료가 있을 경우 그 금액에 관한 것을 포함한 제조건 (諸條件) 이 앞에 설명한 요구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그 특허 소유자와 피면허예정자가 쌍방의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ANSI는 특별조건의 정당성 여부와 불공정한 차별대우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표준개발자가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ANSI와 표준개발자는 조기 공개조건하에서 , 정당한 면허조건의 결여 또는 불공정하게 차별적인 조건의 존재로 인해 부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제안이 합의에 의해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표준제안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가표준으로 승인받지 못하게 된다.

정책의 이러한 면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특허소유자가 각 피면허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포함하는 면허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면허는 그것이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받거나 불공정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면허상의 특별조건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특허소유자는 표준의 개발 초기 (예를 들어, 표준개발자의 회원들의 합의에 의한 승인이 있기 전)에 면허에 관해 교섭하여 피면허자로 하여금 그러한 면허조건의 기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특허소유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개발의 후기 단계 (그 표준개발자의 회원들의 합의에 의한 승인이 있는 후)에 가서 상이한 조건으로 면허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소유자는 표준제안이 미국표준으로 승인되기 전에 ANSI에게 면허의 조건과, 그 조건을 수락했거나 또는 수락을 표시한 독립된 피면허자들이 있을 경우 그 숫자를 명시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ANSI는 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한다.

지침제안의 다른 절에서는 특허권의 초기 공개, 특허소유자의 면허 부여 의향 및 후속적으로 발견되는 특허의 취급 방안에 관한 의향의 초기표시 등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ANSI 특허단체는 정책이란 좋은 것이고 기능을 잘 발휘하며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일반구호를 내걸고 있다. 한번 채택된 지침은 부당한 관료주의적 통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NSI 특허단체가 당면한 한가지 문제점은 상관례 (商慣例)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제 특허면허 법무에서 소위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상관례에 관한 것이다. 예시 (例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표준기구에서는 그 기구의 회원들에게 표준에 사용된 특허의 면허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면허를 원하는 외부의 외국회사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ANSI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떤 행동도 취한 바가 없으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4. 표준에 관한 그 외의 특허정책제도 제안

유럽지역은 그들의 특허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표준에 포함된 기술사양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그 표준을 원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술사양을 표준기구에 기증함으로써 발의자의 아이디어에 대단히 긍정적인 기술상의 노하우 (Know - how)를 널리 보급시킬 수 있게 된다.

유럽표준화기구에의 기증이 IPR 또는 특허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무에서 작업하는 전문가들이 해당 면허 부여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경우, 이를 포함한 실제 상황에 IPR 또는 특허권의 적용을 받는 사양서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들 의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公正하고 정당한 조건들이 달성되어 깊이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해 공개적인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유럽의 정황, 특히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업무의 경우에 엄격히 적용되는 ISO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표준을 채택하는 필요조건, 특허권 소유자로서의 IPR의 합법적인 이익, 그리고 절차의 명확성과 경쟁정책에의 부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을 조화시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정책의 입장에 대해 미국 국제업무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ETSI 지적소유권 위원회가 필수적 특허의 존재에 관련하여 발견해 낸 것은 그것이 중립

적 위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IPRC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 발견된 특허가 전혀 그 가치를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제안의 사본은 1990년 11월 ETSI 회의시 배포되었다. 그리고 검토하기 위해 반송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5.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표준화의 정책

1980년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통과시켰는데 사실 그것은 저작권법이었다. 미국은 1980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도 법은 1970년도 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또는 명령" 이라고 추가해 넣었다. 이 분야에서 용어의 정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은 아래와 같은 특색을 보여 왔다 :

- 1) 객체 코드로 써여진 프로그램은 그것이 비록 인간이 읽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써여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받는다.
- 2) 반도체 룸 회로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계로서 운영하는 "절차 ... 시스템 [또는] 방법" 을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다.
- 3)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만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 4) 일련의 마이크로프로그램이라고 정의되면서 이를 마이크로프로그램 자체의 마이크로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코드는 컴퓨터의 마이크로 명령어 집합의 개별 명령을 수행해 위한 것이며, 이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 5)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와 인간의 접속처럼 컴퓨터 스크린 상에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련의 음성영상작품 (Audiovisual Works) 도 별도의 항목, 즉 음성영상작품 분류 (Category 6)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또한 몇몇 경우에서처럼 특수 스크린 디스플레이도 "화보 (Pictorial)" 또는 "그래픽 (Graphic)" 작품의 분류 (Category 5)에 넣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을 보았다.
- 6)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신안 (新安)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라도 또한 특허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표현 (Expression)" 만 보호할 뿐 그 자체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호에 있어 합당한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창출해 내는 것을 막지 않고 혁신적인 작품을 내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사실적인 면에 대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참고로, 1985년도 개정판 일본 저작권법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교양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회의와 유니버설 저작권 회의도 그 서명 국가의 저자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특허권 보호는 또한 어떤 나라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특허권 보호를 인정했지만 그리 폭넓게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특허권 보호는 단지 소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데 그 까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권의 용건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창의성이 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특허권이 기구에 의하든 방법에 의하든 하나의 개념을 보호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그 개념의 특수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하드웨어는 반드시 신안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목적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표준계획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ETSI의 절차는 이를 위해 한가지 방법을 보여 준다. 그 절차는 직접 특허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 저작권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제도인 지적소유권 제도를 갖고 있다. ANSI 특허단체의 최근 회의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나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특허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즉 저작권 소유자가 그 저작권을 정당하고도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면허 부여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허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다시 도의할 것이다. 이는 신중한 연구를 요하는 주제이다.

결 론

ANSI의 특허정책은 수 년간 잘 운영되어 왔다. 그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그리고 정당한 규제 아래 최대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이고도 자율적인 제도이며 당사자들은 외부 기구의 간섭이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 준다. 우리 미국인은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기 바란다.